

속초시축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증개정조례(안)

의안	149
번호	

제출년월일 : 1993. 5. .

제 출 자 : 속 초 시 장

1. 제 안 사 유

- 의료법 규정에 의한 축탁의료인에게 보수지급을 위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 주 요 골 자

- 보수지급일 근거조항 개정 (안 제3조 참조)

3. 참 고 사 항

- 강원 법규 02124 ~ 98 ('93.3.24) 호로 정비안 시달 ————— 별 첨
- 시정조정위원회 부의 ————— '93. 4. 29

국문서 크레 제 호

국문서출판업프인프수지금크레용역정조제

국문서출판업프인프수지금크레용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

제1조 중 '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의 규정'에 '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의 규정'에
로 한다

로 천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,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제3조(지급일)보수의 지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일에 지급 한다.	제3조(지급일) 제19조의 한다.